



국무조정실
 기획재정부
 외교부
 법무부
 산업통상자원부
 금융위원회

보도자료

국민이 공감하는 **공존의 정의**
 민생에 힘이 되는 **법무행정**

2021. 10. 28.(목) 10:00 배포 즉시 보도

총 2쪽

국무조정실	재정금융정책관실	과장 권민영	전화	044-200-2190
기획재정부	다자경제협력팀	팀장 배성현		044-215-7710
외교부	경제협정규범과	과장 이준희		02-2100-7716
법무부	국제분쟁대응과	과장 한창완		02-2110-3739
산업통상자원부	통상분쟁대응과	과장 정하늘		044-203-4880
금융위원회	금융분쟁대응TF단	단장 이영직		02-2100-2575

한-이란 투자협정(BIT)에 따른 국제투자분쟁(ISDS) 중재신청서 접수

□ 이란 다야니 일가는 1998년 한-이란 투자협정(BIT)에 근거하여, 국제 투자분쟁(Investor-State Dispute Settlement, ISDS) 중재신청서(Notice of Arbitration)*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하였습니다(2차 사건).

* 2021. 10. 18. 법무부에 접수. 청구인이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하는 서면

□ 1차 사건 진행 경과

- 이란 다야니 일가는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과정에서 계약금 (약 578억 원)이 채권단에 의해 몰취 당하자 정부를 상대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(ISDS)을 제기하였습니다(1차 사건).
- 1차 사건 중재판정부는 2018. 6. 계약금 몰취가 한-이란 투자협정 (BIT)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.

- 정부는 위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영국법원에 제기하였으나 2019. 12. 20. 기각되었습니다.
- 정부는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, 대이란제재 등으로 인한 외화 및 금융거래 제한으로 배상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
□ 2차 사건의 제기

- 다야니는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 의무에 반하고 한-이란 투자협정상 공정·공평대우, 최혜국대우, 송금보장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제2차 사건을 제기하였습니다.

□ 정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(단장: 법무부 법무실장)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(국무조정실, 기획재정부, 외교부, 법무부, 산업통상자원부, 금융위원회) 합동대응체계를 구성하고, 2021. 10. 25. 제1차 분쟁대응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.

- 종전 1차 사건(2015년 제기)은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로 대응하였으나, 이번 2차 사건(2021년 제기)은 법무부가 주무부처로 대응할 예정입니다. 이는 일관된 대응을 위하여 분쟁대응단을 법무부에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‘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’ (대통령훈령, 2019. 4. 5. 시행)에 따른 것입니다.

□ 정부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과 우리 국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임과 아울러 향후 진행되는 분쟁절차에도 최선을 다하여 임하겠습니다.